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0가단13351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정원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형

변 론 종 결 2021. 6. 25.

판 결 선 고 2021. 8. 20.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4,708,305원 및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89%의, 21,626,000원에 대하여는 2020.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15. 12. 7.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

1) D 주식회사의 대출금

가) D 주식회사는 2016. 7. 14.경 피고 B에게 3,000,000원을 계약만료일 2019. 5. 30.,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각 연 34.894%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 B은 제때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D 주식회사는 2015. 5. 29. E 주식회사에게, E 주식회사는 2018. 10. 26. 원고에게 각각 피고 B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순차 양도하고 피고 B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각 채권양도에 따른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하였다.

나) 2020. 5. 28.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피고 B의 미지급원리금은 합계 9,045,548원(= 원금 3,000,000원 + 이자 6,045,548원)이고, 2020. 5. 29. 이후의 약정지연이자율은 연 34.89%이다.

2) 주식회사 F의 신용카드 대금채권

가) 피고 B은 2014. 5. 31.경 주식회사 F와 사이에 신용카드회원가입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다. 주식회사 F는 2014. 10. 31. G 주식회사에게, G 주식회사는 2016. 5. 30. H 유한회사에게, H 유한회사는 2016. 5. 20. 원고에게 각각 피고 B에 대한 위 신용카드 대금채권을 순차 양도하고 피고 B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각 채권양도에 따른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하였다.

나) 2020. 5. 18.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피고 B의 미지급원리금은 합계 55,662,757원(= 원금 21,626,000원 + 이자 34,036,757원)이고, 2020. 5. 29. 이후의 약정지연이자율은 연 27.9%이다.

나. 피고 B의 처분행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망인이 2015. 10. 20.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C와 자녀들인 피고 B 및 J, K는 2015. 12. 7.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이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2015. 12.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B의 무자력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9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L대부, M조합, N카드, O카드, P카드, Q카드에 대한 각 해당 대출원리금채무 또는 카드원리금채무 등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R,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법원행정처 전산정보센터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위 각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미지급한 양수금 합계액인 64,708,305원(= 9,045,548원 + 55,662,757원) 및 그 중 D 주식회사의 대출원금 3,000,000원에 대하여는 기준일 다음날인 2020.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자율 연 34.89%의, F 주식회사의 신용카드대금 원금 21,626,000원에 대하여는 기준일 다음날인 2020. 5. 29.부터 다

앞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자율 연 27.9%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피고 B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던바,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행한 사해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C의 고유재산인데, 남편인 망인의 명의로 등기를 해 두었다가 망인의 사망으로 피고 C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C의 고유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은, 망인이 사망 전에 상당한 재산을 피고 B에게 증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는데 이를 고려하면 피고 B은 사실상 상속받을 재산이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의 특별수익이나 차용금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피고 C은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관하여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당시 피고 C이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채무자인 피고 B은 사해행위로서 자신의 상속지분인 2/9 지분을 피고 C에게 이전한 것이므로 원인행위를 취소함과 아울러 원상회복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의 상속지분인 2/9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조미옥

[별지]

부동산 목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S에 있는 T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U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슬래브위 기와지붕 3층 연립주택 T동

1층 내지 3층 각 382.95㎡, 지층 439.9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광진구 S 대 1621.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V호 철근콘크리트조 57.15㎡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1621.2분의 56.60

2. 충청남도 아산시 W 임야 6578㎡, 끝.

